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혜지 의원(찬성자 : 24명)

나. 의안번호 : 제 2515 호

다. 발의일자 : 2025. 3. 28.

라. 회부일자 : 2025. 4. 2.

2. 제안이유

-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공사의 품질검사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을 활용토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시행 2024.7.10.)됨에 따라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에 건설공사 품질시험 대행 의뢰시 정보망을 통해 의뢰하도록 하고,
- 품질검사가 완료되면 7일 이내 정보망에 등록하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대한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자 등이 품질시험소에 건설공사의 품질검사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정보망을 통하여 의뢰하도록 함(안 제3조제 3항).

나. 품질시험소장으로 하여금 의뢰받은 품질검사의 성적서 및 내용을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5. 04. 05. ~ 04. 09.)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건설기술 진흥법」이 '24.1.9일 개정(시행 '24.7.10.)되어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자 등이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이하 “품질시험소”)에 건설공사의 품질검사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을 통해 신청하고 해당 결과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토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하는 것임.

[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①·② (생략)	제3조(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자 등이 시험소장에게 건설공사의 <u>품질검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검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검사 의뢰서를 제출받은 시험소장은 시험완료 예정일이 명시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u>	③ ----- ----- <u>품질검사 대행을</u> ----- <u>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품질검사를 의뢰-----.</u>
<u><신 설></u>	④ <u>시험소장은 제3항에 따라 대행을 의뢰받은 품질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u>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7조(품질검사 성과표 서식) <u>품질검사 성과표의 서식은 시험소장이 시험 종목에 따라 정하여 사용한다.</u>	<u><삭 제></u>
<u>[별지 제1호서식] 품질검사 의뢰서</u>	<u><삭 제></u>

■ 품질시험소의 품질검사 현황

○ 품질시험소는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 제60조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²⁾와 현행 조례 제3조³⁾에 따라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공사의 품질검사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품질검사 의뢰서를 접수받고 조례 제13조⁴⁾에서 정한 수수료⁵⁾를 납부받아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최근 4년간('21~'24년) 연평균 대행 의뢰 건수는 약 1,706건으로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연평균 약 4억 3천만원이 발생하고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7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국토관리청
 2. 지방중소기업청
 3. 국가기술표준원
 4. 시·도의 건설시험 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5. ~ 8. (생략)
- 3)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자 등은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하지 않은 품질검사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에게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시,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자치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 의뢰는 다른 시험기관 등에 우선하여 시험소장에게 한다. 다만, 자치구의 순수한 자체재원 사업과 시험소장이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자 등이 시험소장에게 건설공사의 품질검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검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검사 의뢰서를 제출받은 시험소장은 시험완료 예정일이 명시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생략)
- 4)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품질검사 등 수수료) ① (생략)
② 시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의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검사 수수료를 산출하여 그 금액을 매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시 소요되는 현장 출장 경비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그 금액을 매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5)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5호(2025.1.23.)

있으며([표] 참조), 수수료 수준은 타 기관 대비 일부 시험 항목에서 다소 높은 편이나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민간 시장의 경쟁 논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으로, 연도별 품질검사 대행 의뢰 및 시험기관별 수수료 비교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품질시험소 최근 4년간 품질검사 대행 의뢰 건수 및 수수료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498	350,703	1,801	419,907	1,871	500,269	1,652	448,165

[표] 품질시험소와 민간 시험기관 수수료 비교

(단위 : 천원)

시험항목			품질시험소	A 시험연구원	B 시험연구원	비고
토 질 분 야	준설토	함수비	30,440	-	19,800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도(공극율)	106,790	45,100	58,300	
		안정도	94,850	55,000	36,300	
	성토용흙	다짐	286,080	138,490	338,800	
		함수비	40,090	13,090	19,800	
재 료 분 야	철 근	인장강도	41,020	39,600	30,800	
	콘크리트 벽돌	압축강도	60,450	72,600	41,800	
		암석	압축강도	116,600	47,300	
	인터록킹 블록	휨강도	65,800	61,600	63,800	
	도자기질 타일	꺾임강도	28,520	56,100	19,800	
화 학 분	발포폴리스 티렌단열재	압축강도	25,280	50,600	47,300	
	액체방수제	안정성	109,670	182,600	177,320	

야	합성고분자 계방수시트	인장강도 (무처리)	32,910	39,600	41,800	
	개량아스팔 트방수시트	인장강도 (무처리)	39,680	117,700	41,800	
	건설용도막 방수제	인장성능 (인장강도)	93,440	64,900	72,600	

※ 수수료 산출기준

- 품질시험소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관련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 민간시험기관 : 별도의 자체 산출 규정

■ 개정안 검토의견(안 제3조)

- 안 제3조제3항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자 등이 품질시험소에 품질시험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현행 서면 제출 방식을 폐지하고 법 제62조제15항6)에 따라 구축된 정보망7) 내 전자적 공개입찰 방식([표] 참조)을 활용하도록 의뢰 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 안 제3조제4항은 품질시험소장이 품질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6)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 ⑭ (생략)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⑯ ~ ⑱ (생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5항에 따라 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과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 ④ (생략)

7)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https://www.csi.go.kr/cmqa/main.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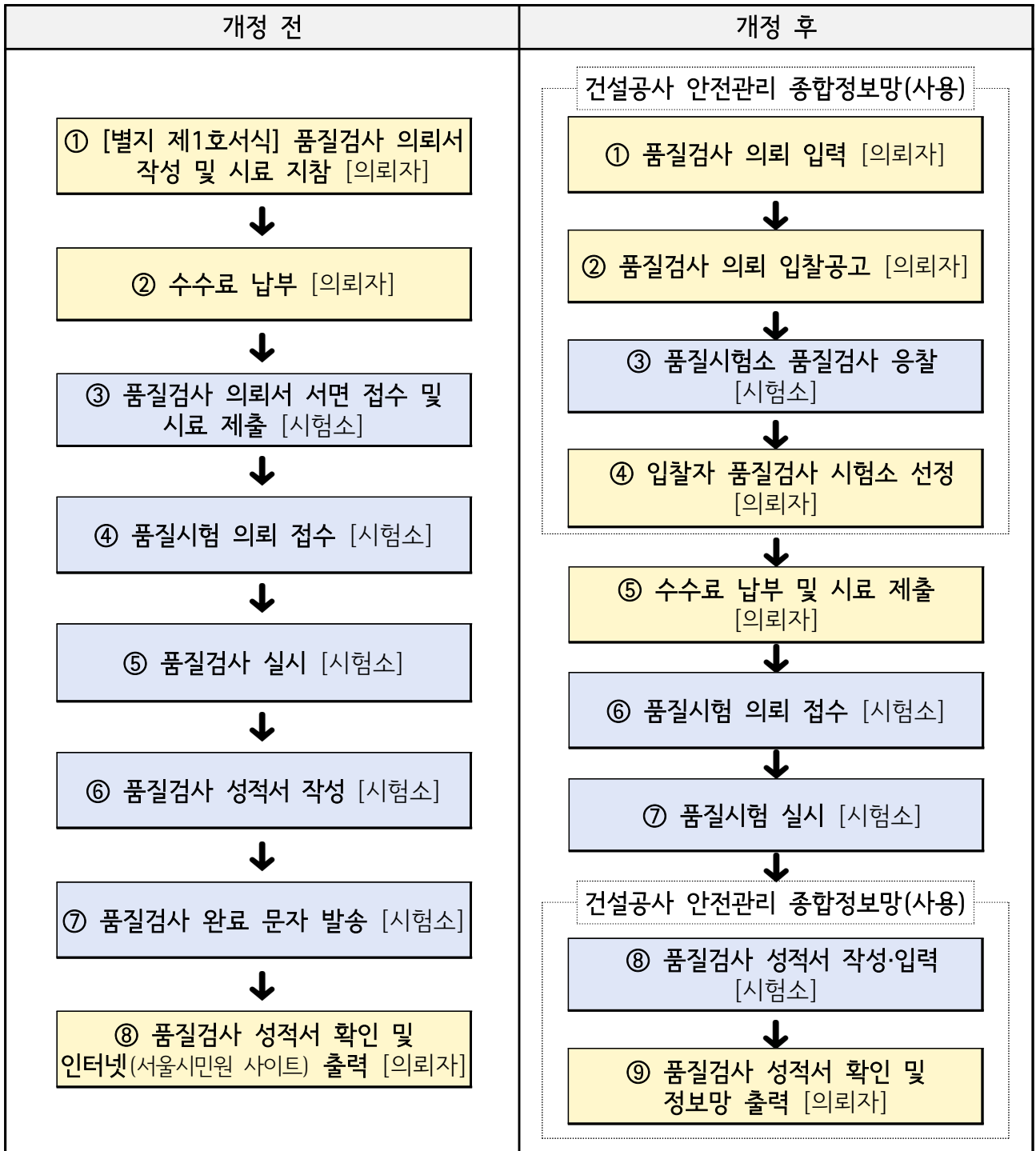
〈건설공사 품질관리 종합정보 시스템〉

○ 목적

- 현장시험을 실시한 건설자재·부재에 대해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입력·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를 통한 사후입력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한 전 과정입력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설현장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

이내에 해당 성적서 및 검사 결과를 정보망에 입력하여 시민 등 이해관계자가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표] 조례 개정 전·후 품질시험소 품질검사 업무 흐름 변화 모식도



- 이들 조항은 '24.1.9일 개정(시행 '24.7.10.)된 법 제60조제1항 및 제3항⁸⁾에서 품질검사의 대행 의뢰는 정보망을 통해 신청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 또한 7일 이내에 정보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정한 규정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 이에 따라 품질시험소는 품질검사 의뢰의 접수 단계에서부터 검사기관 선정, 시험 시행, 결과 관리 등에 이르는 모든 행정 절차가 표준화·일원화됨으로써 절차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결과 관리와 정보 공개를 통해 업무의 투명성과 대외적 공신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안 제7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삭제는 각각 “품질검사 성과표 서식의 작성 방법”과 “품질검사 의뢰서 서식”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품질검사 의뢰 절차가 정보망 내에서 표준화·전산화됨에 따라 별도의 서식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임.
- 다만, 현행 조례 제15조⁹⁾에 따라 서울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8)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9)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수수료 면제) 시험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와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2. ~ 3. (생략)

발주 공사는 품질시험소의 품질검사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 시행으로 정보망을 통한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품질시험소가 서울시 발주공사의 품질검사 의뢰 입찰공고를 인지하지 못하여 자칫 응찰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외부 민간 시험기관으로부터의 불필요한 유료 검사가 진행될 소지도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내 지침 등 실무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